

제 979 호
1983. 8.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김 현 봉
공 도 관 김 영 기
전 화 :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중랑일건빌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792 호 : 서울특별시묘지및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3
제 1793 호 :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외회조례	3
제 1794 호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5
◎ 고 시	
제 423 호 : 다포로제 1 구역제 7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	8
제 424 호 : 도시계획아시안공원조성계획지적승인	9
제 425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	10
제 426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25

< 이 면 계 속 >

제										
일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2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	25
제 42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26
제 429 호 :	육류연동가격고시	27
제 43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7
제 431 호 :	공중이용 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한고시	27
제 432 호 :	무교구역제 14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28

◎ 공 고

제 450 호 :	신당, 청량리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변경및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29
제 45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완료공고	30
제 452 호 :	다동구역제 1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3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묘지 및 강제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92 호

서울특별시묘지및강제장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묘지 및 강제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제9조와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93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심의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
3.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등 특별한 전국행사 참가지원
4.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 1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의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안전기획 부중앙분실장, 506보안부대장, 수도군단장, 수도경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국장, 범민족을립파 서울특별시추진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계 1인, 경제계 2인을 의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체육회, 범민족서울특별시추진위원회위원등 상호 중복을 배제하여 위촉한다.

제 4 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결위원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제 7 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간사등) ① 협의회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내 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와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94 호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 7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 5 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사항
5. 사업에 관한사항

6. 임직원에 관한사항
7. 이사회에 관한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9. 공고에 관한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과 직원

제 7 조 (임원)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인 이내, 감사 1 인을 둔다.

제 8 조 (이사장) ①이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 9 조 (이사) ①이사는 시장과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중 1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장이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직무를 겸할수 없다.

제 12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사 업

제 14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지하철 2호선 을지로구간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관리운영
 - 2.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서울시 관할시설물 및 지하상가의 관리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청소 및 부대사업
- 단, 지하도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할 지하철·차도는 제외

제 15조 (대행사업) ①공단은 국가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4 장 재무회계

제 16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 18조 (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6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9조 (처리위 원칙) 공단의 처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서울특별시세입세의 납입

제 21 조 (결손의 처리) ① 매 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감 독

제 22 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제,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3 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4 조 (시유재산의 유상사용) 시의 재산을 공단이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3 장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5 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2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사업범위에 대한 특별) 공단의 사업범위는 제 1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설립당시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관리 운영
 2. 사업확장시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정하는 사업
- ③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83.12.31 까지로 한다.

- ④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항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을 공단 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23 호

마포로제 1구역제 7 지구사업시행
 인가변경고시

1. 서울시고시 제 341 호 (81.9.23)로

(2) 건축계획변경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시고시 제 367 호 (83.7.20)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제 1항 단서규정 및 동시행령 제 20 조제 2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공람을 생략하고 동법 제 17 조제 2항 및 동시행령제 21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1983. 8. 17

서울특별시장

가. 고시내용

(1) 시행기간

중건 : 1981.9.23- 1983.9.30

변경 : 1981.9.23- 1984.3.30

사유 :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구 분	기 정	변 경
건축면적	1,682.02 m ²	1,682.02 m ²
연면적	31,556.27 m ²	33,975.38 m ²
건폐율	39.094 %	39.094 %
용적율	531.11 %	583.899 %
층 수	15/3	17/3

※ 변경사유 : 용적을 완화에 따른 지상 3층 증축

○서울특별시고시제 424 호
도시계획아시아안공원조성계획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273호('83.8.10)로 결정된 아시아안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올림픽시설 담당관 및 강동구청 공 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17
 서울특별시 장
 가. 공원조성 계획 지적승인 조서 : 별첨
 나. 관계도면 : 별첨 (도면상략)

공원조성 계획 지적승인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 규모 (㎡)		구조	비고
				바닥면적	인면적		
조경 시설	4	연못및조각	530				벽극상징
	5	연못	2,000				
	6	연못및조각	2,020				오문마크 상징
	7	분수	160				
	8	화단	300				
	소계			5,020			
교양 시설	1	야외극장	1,600	440	440	철근콘크리트조	
	10	전시관	지하구조	(3,426)	(3,426)	"	
	소계		1,600	440	440		
관리 시설	11	관리사무실	1,600	100	100	철근콘크리트조	
	소계		1,600	100	100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 명	부지면적 (㎡)	시설 규모(㎡)		구 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통 시설	2	광 장	2,470				
	3	"	5,600				
	소계		8,070				
합계			16,290	540	540		

◎ 서울특별시고시제 425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관리
처분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82 호 (82.2.22) 로 시행인가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1조, 제 42조 제 4 항 및 동시행령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1983. 8.18

서울특별시장

가. 인가사항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1 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도화동 16-17외 31 필지
 - 시행면적 : 3,667.6 ㎡
-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마포구 도화동 16-42 번지
마포구 제 1 구역 제 10 지구 재
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홍상기

- 4)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별첨)
- 5)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별첨)
-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가의 권리명세 (별첨)
- 7)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따른 청산방법 (별첨)
- 8)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별첨)
- 9)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별첨)
- 10) 환지 예정지 조서 (별첨)

4.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4.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성명	주소	종	
		소재지	지번
최복균 황필수	마포구창전동 34-2	마포구도화동	16-16
	성동구행당동 318	"	26
임채음 이순자	경기도수원시지동 270-9	"	51
	마포구대흥동 560	"	28
강하청 이복녕	" 도화동 7 마포 APT 5 동 609	"	31
	" 창전동 28-230	"	49
정기영 김영자	" 도화동 16-55	"	33
	" " 33-21	"	36
김영순 박기순	" " 16-45	"	40
	" " 16-46	"	45
장준덕 조임경	중구신당동 311-14	"	46
	마포구용강동 204	"	47
홍상기	" 공덕동 284-3	"	48
		"	52
서병용 송순희	" 용강동 120-5	"	37
	" 도화동 16-32	"	42
이산용	" " 16-41	"	55
		"	27
한국방송협회 안창덕	중구태평로 1 가 76	"	32
	마포구도화동 233	"	41
윤석삼 이윤자	" " 347-76	"	50
	" " 7 마포 APT 7-606	"	20
		"	17
		"	18
		"	29
		"	30

전 토 지 명 세			비	크
지 목	공부상면적	사업시행면적		
대 시	276.0	65.3		
"	123.0	123.0		
"	23.8	23.8		
"	130.0	130.0		
"	70.1	70.1		
"	111.4	111.4		
"	268.1	268.1		
"	99.8	99.8		
"	136.2	136.2		
"	92.2	92.2	1/2 석 공유	
"	76.0	76.0		
"	62.8	62.8		
"	46.6	46.6		
"	4.3	4.3		
"	60.8	60.8	대매예약가등기 권리자 정유개발(주)	
"	120.0	120.0	"	
"	1,390.1	55.0		
"	53.6	47.3		
"	83.3	83.3		
"	71.7	71.7		
"	53.2	53.2		
"	888.9	888.9		
"	20.8	20.8	대매예약가등기 권리자 정유개발(주)	
"	27.1	27.1	"	
"	46.3	46.3	"	
"	172.2	172.2	"	

성 명	주 소	종	
		소 제 지	지 번
조 항 길	마포구도화동 16-35	마포구도화동	16-34
		//	35
점 우 개 발 (주)	용산구도동 1 가 2-10	//	14
		//	349-8
		//	385-4
		//	
합 제			

5.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	종 전 의 토 지 및 건 축 물 의 명 세 와 가 격				
	지 번	면 적		명 가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최 복 균	도화동 16-16	65.3	67.77	18,754,150	9,148,950
황 필 수	26	123.0	25.20	26,063,700	3,276,000
	51	23.8		5,043,220	
임 체 음	28	130.0	17.13	31,460,000	3,091,965
	이 순 자	31	70.1	19.36	15,379,940
		49	111.4		24,441,160
강 하 청	33	268.1	53.00	74,974,165	6,890,000
이 복 병	36	99.8		30,164,550	
정 기 영	40	136.2	15.80	28,445,170	2,370,000
김영자, 김영순	45	92.2	17.20	21,616,290	2,322,000
박 기 순	46	76.0	9.64	16,104,400	1,265,000
장 준 덕	47	62.8	13.00	13,307,320	1,885,000
조 입 경	48	46.6	11.45	10,925,370	1,660,250

전 토 지 닝 세			비 고
지 목	공부상년적	사업시행년적	
대 지	17.5	17.5	매매계약가등기 권리자 정우개발(주)
"	83.3	83.3	"
"	1,587.6	380.3	
"	79.3	64.2	
"	82.7	70.2	
	6,358.7	3,571.7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액	면 적		추 산 액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계
27,903,110	20.3	132,435	5,559,698	38,671,312	44,231,000
29,339,790	44.5	290,415	12,197,055	84,797,945	96,995,000
5,043,220					
34,551,965	24.2	157,980	6,637,367	46,126,633	52,754,000
18,380,440	51.6	336,716	14,146,852	98,310,148	112,457,000
24,441,160					
81,864,165	70.4	459,573	19,282,813	134,035,187	153,318,000
30,164,550	34.5	225,296	9,458,186	65,739,814	75,198,000
30,815,170	24.2	158,224	6,637,367	46,126,633	52,764,000
23,938,290	22.7	147,895	6,213,540	43,180,360	49,394,000
17,369,400	22.1	144,198	6,053,579	42,103,421	48,157,000
15,192,320	14.7	96,282	4,041,340	28,065,160	32,107,000
12,585,620	14.3	93,116	3,909,186	27,141,814	31,051,000

분양대상자	종 전 의 토 지 및 건 축 물 의 명 세 와 가 격				
	지 번	면 적		평 가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홍 상 기	도화동 16-52	4.3		1,111,550	
	37	60.8	9.82	18,194,400	1,153,850
	42	120.0	18.86	36,270,000	2,829,000
서 범 공 송 순 회	55	55.0	15.55	12,067,000	2,488,000
	27	47.3		8,286,960	
이 산 몸	32	83.3		14,594,160	
	41	71.7		12,561,840	
	50	53.2		9,320,640	
한국방송협회	20	888.9	49.35	248,580,885	7,321,500
안 창 덕	17	20.8	10.50	4,407,520	1,496,250
	18	27.1		5,742,490	
윤 석 삼	29	46.3	7.00	13,297,360	945,000
	이 윤 자	30	172.2	39.08	41,672,400
조 향 길	34	17.5		1,103,760	
	35	83.3	15.00	25,177,425	3,150,000
점 우 개 발(주)	14	580.3	55.10	97,756,115	19,772,740
	마포동 347-8	64.2	9.00	8,734,410	2,665,000
	385-4	70.2	11.00	9,550,710	2,860,000
합 계		3,571.7	489.81	885,109,070	85,062,005

6. 분양대상사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분양대상자	종 전 의 토 지 및 건				
	토 지				건
	지 번	지 목	원지적	시행면적	구 조
안 창 덕	마포구도화동 16-17	대 지	20.8	20.8	시멘트블록스레트
	18	//	27.1	27.1	
윤 석 삼	29	//	46.3	46.3	//
	이 윤 자	30	//	172.2	
조 향 길	34	//	17.5	17.5	//
	35	//	83.3	83.3	
홍 상 기	37	//	60.8	60.8	//
	42	//	120.0	120.0	
합 계			548.0	548.0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액	면 적 추 산 액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계
1,111,550					
19,348,250	46.9	306,119	12,851,007	89,306,993	102,158,000
39,099,000					
14,555,000	14.3	93,116	3,909,186	27,141,814	31,051,000
8,286,960	24.2	158,224	6,637,367	46,126,633	52,764,000
14,594,160					
12,561,840	24.2	158,224	6,637,367	46,126,633	52,764,000
9,320,640					
255,902,385	272.4	1,777,800	74,624,321	624,493,679	699,118,000
5,903,770	12.4	31,098	3,404,607	23,636,393	27,041,000
5,742,490					
14,242,360	14.7	96,282	4,041,840	28,065,160	32,107,000
47,143,400	51.6	337,237	14,146,852	93,310,148	112,457,000
1,103,760	32.7	214,068	8,991,705	91,750,295	100,742,000
28,327,425					
117,528,855	156.0	1,018,280	42,748,793	388,493,207	431,242,000
11,399,410					
12,410,710	992.9	6,482,578	272,130,618	2,117,749,382	2,389,880,000
970,171,075					

축 물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물			권리종목	권리내용	권 리 자	
용도	층수	면 적			성 명	주 소
주·택	단층	10.50	가등기	매매예약	정우개발(주)	용산구도동1가2-10
//	//	7.00	//	//	//	//
//	//	39.08	//	//	//	//
//	//	15.00	//	//	//	//
//	//	9.82	//	//	//	//
//	//	18.86	//	//	//	//
		106.26				

7.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가.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경계와 평가액						비고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평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계	
김태욱	종로구명창동 367-11	마포구마포동	95.9	15.00	13,047,195	4,650,000	17,697,195	김태욱 $\frac{2}{3}$
윤영근	관악구신림동 10-52	349-9						윤영근 $\frac{1}{3}$

나. 청산방법

종전의 토지 95.9㎡에 200%를 승한 면적을 사무실을 분양했을 시의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현금 청산기로 한다.
 즉 58.02평 (191.8㎡)

$\times 1,300,000 \text{ 원} = 75,426,000 \text{ 원}$

8.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없음
 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없음

나.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도로)

노선명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소로 1류(4번)	10 m	20 m	마포동 376-3	마포동 312-3

다.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명세

지번	지목	원지적	공공용지	소유자
마포구마포동 349-9	대지	95.9	95.9	김태욱, 윤영근, 허병정우개발(주)
349-8	"	79.3	64.2	
385-4	"	82.7	70.2	
합계		257.9	230.3	

9.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9.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가.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층 별	구 조	용 도	토 지	
			면 적	추 산 액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상 가	340.6	93,365,048
지상 1층	"	"	227.4	62,283,032
2층	"	사무실	283.6	77,692,574
3층	"	"	11.2	3,068,253
4층	"	아파트	165.1	45,248,493
5층	"	"	100.0	27,421,586
6층	"	"	165.1	45,248,493
7층	"	"	165.1	45,248,493
9층	"	"	122.7	33,635,226
10층	"	"	115.7	31,716,125
11층	"	"	89.8	24,630,367
12층	"	"	164.1	44,990,859
13층	"	"	164.1	44,990,859
14층	"	"	46.9	12,851,007
15층	"	"	122.7	33,635,226
합 계			2,284.1	626,025,647

나. 처분방법

조합에서 일반에게 공개분양하여 분양수입금을 공사대금및 청산대금으로충당

9.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 조합원의 주소, 성명 해당없음.

건 물		합 계
면 적	추 산 액	
2,223,946	848,475,152	941,840,200
1,483,706	1,135,381,352	1,197,664,400
1,850,649	627,466,466	705,159,040
72,849	25,579,747	28,648,000
1,077,204	314,518,507	359,767,000
652,676	190,563,414	217,985,000
1,077,204	314,518,507	359,767,000
1,077,204	314,518,507	359,767,000
800,571	233,743,774	267,379,000
755,858	220,333,875	252,050,000
586,944	171,096,633	195,727,000
1,072,306	312,587,141	357,578,000
1,072,306	312,587,141	357,578,000
306,349	89,306,993	102,158,000
801,810	233,743,774	267,379,000
14,911,582	5,344,420,993	5,970,446,610

10. 환지 예정지 조서

소유자	종 전 토 지 및 건 물						분 양				예 정					청 산										
	토 지			건 물			토 지		구 조		물 질					청 수		교 부								
	지 번	지 목	지 적	구 로	용 도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구 조	층 별	용 도	면 적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전 용	공 유	계											
최복관 황필수	도화동 16-16	대지	65.3	시멘트블록스레트	공방, 주택	67.77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0.3	철근콘크리트	507	아파트	105,522	26,913	132,435	1.4	9,295	1.3	8,456								
	도화동 16-26	대지	123.0	"	주택	25.20	도화동번지 "	3277 중 21.2				802	"	125,876					32,104	157,980						
	51	"	23.5	"	"	"	"	3277 중 20.3				807	"	105,522					26,913	132,435						
	소 계		146.8			25.20		3277 중 44.5						231,398					59,917	290,415						
임채음 이순자	도화동 16-28	대지	130.0	시멘트블록스레트	주택	11.13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4.2	"	804	"	125,876	32,104	157,980			16.0	104,030								
	도화동 16-31	대지	70.1	시멘트벽돌스레트	"	19.36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7.4				801	"	142,414					26,322	178,736						
	49	"	111.4	"	"	"	"	3277 중 24.2				803	"	125,876					32,104	157,980						
	소 계		181.5			19.36		3277 중 51.6						268,290					68,126	336,716						
강하정	도 동 16-33	대지	268.1	시멘트블록스레트	주택	53.00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0.3	"	907	"	105,522	26,913	132,435			14.4	93,707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7.4				1,101	"	142,635					30,378	179,013						
							"	3277 중 22.7				1,105	"	118,024					30,101	148,125						
	소 계		268.1			53.00		3277 중 70.4						276,181					180,292	459,573						
이복녕	도화동 16-36	대지	99.8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2.1	"	906	"	114,895	29,303	144,198	1.5	9,906										
							"	3277 중 12.4				1,506	"	64,618					16,480	81,098						
	소 계		99.8					3277 중 34.5						179,513					45,783	225,296						
정기인 김영자(김영순) 박기순 장준덕 조임경 홍상기	도화동 16-40	대지	136.2	시멘트블록스레트	주택	15.80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4.2	"	1,403	"	126,071	32,153	158,224	0.0	3,886	15.7	102,596								
	" 16-45	"	92.2	"	"	17.20	" "	3277 중 22.7				805	"	117,541					30,054	147,595						
	" 16-46	"	76.0	"	"	9.64	" "	3277 중 22.1				806	"	114,895					29,303	144,198						
	" 16-47	"	62.8	"	"	13.00	" "	3277 중 14.7				1,408	"	76,716					19,566	96,282						
	" 16-48	"	46.6	"	"	11.45	" "	3277 중 14.3				1,407	"	74,194					18,922	93,116						
	도화동 16-52	대지	4.3					3277 중 22.7				"	505	"					117,841	30,054	147,895					
	37	"	60.8	시멘트블록스레트	주택	9.82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24.2														1,003	"	126,071	32,153	158,224
	42	"	120.0	"	"	18.86	" "	"														"	"	"	"	"
	소 계		185.1			28.68		3277 중 46.9											243,912	62,207	306,119					
	서병용	도화동 16-55	대지	55.0	시멘트벽돌스레트	사무실	15.55	도화동번지 대지				3277 중 14.3	"	1,507					"	74,194	18,922	93,116			2.6	16,884

소유자	중 전 토 지 및 건 물						분 양 예 정										청 산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청 수		고 브	
	지 번	지 목	지 적	구 조	용 도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구 조	층 별	용 도	면 적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전 용	공 유	계						
충순회	도화동 16-27	대 지	47.3				도화동번지	대 지	3277 중 24.2	철근콘크리트	1,404	아파트	126,071	32,153	158,224					
	32	"	83.3						3277 중 24.2									18.0	117,626	
	소 계		130.6						3277 중 24.2				126,071	32,153	158,224					
이산용	도화동 16-41	"	71.7				도화동번지	"	3277 중 24.2	"	1,002	"	126,071	32,153	158,224					
	50	"	53.2						3277 중 24.2									14.3	93,146	
	소 계		124.9						3277 중 24.2				126,071	32,153	158,224					
한국방수협회 안창덕	도화동 16-20	"	888.9	시멘트블록시멘트외주	점 포	49.35	도화동번지	"	3277 중 272.4	"	3 층 1	사무실	1340,961	346,839	1,777,800					
	도화동 16-17	"	20.3	시멘트블록스레트	주 택	10.50	도화동번지	"	3277 중 12.4	"	1,406	아파트	64,618	16,480	81,098			1.6	10,622	
	18	"	27.1						3277 중 12.4											
소 계		47.9			10.50			3277 중 12.4				64,618	16,480	81,098						
윤석상 이윤자	도화동 16-29	"	46.3	시멘트블록스레트	주 택	7.00	도화동번지	"	3277 중 14.7	"	1,508	아파트	76,716	19,566	96,282			0.6	3,648	
	도화동 16-30	"	172.2			39.08	도화동번지	"	3277 중 24.2	"	1,104	"	126,071	32,153	158,224					
									3277 중 27.4		1,401	"	142,635	36,378	179,013			1.0	6,383	
소 계		172.2			39.08			3277 중 51.6				268,706	68,531	337,237						
조항길	도화동 16-34	"	17.5						3277 중 22.1		506	아파트	114,895	29,303	144,198					
	35	"	83.3	시멘트블록스레트	주 택	15.00	도화동번지	"	3277 중 3.5	"	1 층 11	상 가	17,420	5,670	23,090					
									3277 중 3.5		12	"	17,420	5,670	23,090	2.6	16,900			
									3277 중 3.6		14	"	17,870	5,320	23,690					
소 계		100.8			15.00			3277 중 32.7				167,605	46,463	214,068						
정우개발(주)	도화동 16-14	"	30.3	연와조평옥개	주 택	55.10			3277 중 97.0		기하 2 층 26	상 가	473,325	159,738	633,063					
	마포동 349-8	"	64.2	목조와급		9.00	도화동번지	"	3277 중 35.7	"	27	"	174,074	58,747	232,821					
	385-4	"	70.2			11.00			3277 중 23.3		30	"	113,943	38,453	152,396			1.7	11,120	
	소 계		514.7			75.10			3277 중 156.0				762,342	255,938	1,018,280					
합 계		3,571.7			489.81			3277 중 992.9				4,967,683	1,534,885	6,422,568	6.1	39,987	112.0	730,197		

1983.8.17

배 정					청 산			
층 별	용 도	면 적			토 지	건 물	교 부	
		전 용	공 유	계			토 지	건 물
1,404	아파트	126,071	32,153	158,224			18.0	117,626
		126,071	32,153	158,224				
1,092	"	126,071	32,153	158,224			14.3	93,446
		126,071	32,153	158,224				
3층1	사무실	1340,961	346,839	1,777,800				
1,406	아파트	64,618	16,480	81,098			1.6	10,622
		64,618	16,480	81,098				
1,508	아파트	76,716	19,566	96,282			0.6	3,648
1,104	"	126,071	32,153	158,224				
1,401	"	142,635	36,378	179,013			1.0	6,383
		268,706	68,531	337,237				
506	아파트	114,895	29,303	144,198				
11층	상가	17,420	5,670	23,090	2.6	16,900		
12	"	17,420	5,670	23,090				
14	"	17,870	5,820	23,690				
		167,605	46,463	214,068				
이하1층	상가	473,325	159,738	633,063				
26	"	174,074	58,747	232,821				
30	"	113,943	38,453	152,396			1.7	11,120
		762,342	255,938	1,018,280				
		4,947,683	1,534,865	6,482,548	6.1	39,987	112.0	730,197

◎서울특별시고시제 426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승안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379 호(83.7.22)의 변경 결정된 도시 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1항 1호의

권한 위임 규정의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3. 8. 1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학교)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학 교	강남구서초동 1170 할대	55,290	(감) 7,335	47,755	

◎서울특별시고시제 42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18 호('77.9.1) 및 제 653 ('78.12.14) 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도시 계획사업(도로, 광장)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성토목과 또는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8. 16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위치 : 강동구성내동 및 길동지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
- 다. 사업의구분 : B = 13, L = 55, 포장 = 2.7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 연가일로부터 '84.6.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 사. 도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도시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삼 명	주 소	성 명
성내동	397-42	대	26.4㎡	종로구운니동 97	이금임		
길 동	426-1	"	6.3㎡	종로구제동 143	이태훈		
출건조서 <지장물>							
연번	소재지	종류	구조	수량	소 유 차	비 고	
1	길동 427-1	건물	연와조	49.5㎡	충북외산군외산면대사리 111 이태훈	주택	
2	성내동 379-41	건물	스라브	93.5㎡	종로구운니동 97 이금임	주택	
<p>◎서울특별시고시제 428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p> <p>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등법사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 학교변경 결정조서</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3. 8. 19</p> <p>서울특별시장</p>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 교 (서일공전)	동대운구년목동 49-3 일대	10,670	(증) 2,030	12,70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29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8. 18

서울특별시장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1,750 원

2. 시행일

1983.8.20 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 43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주체 : 강남구잠원동 130-17

한신공영(주) 대표 박 상 서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강남구잠원동 2번지 4호외 42필지

나. 면적 : 11,895.24㎡

다. 규모 : 아파트 11층 2동 1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83.8-1984.12.31

1983. 8. 19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431 호

공중이용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9 조 별도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허가기준의 공중이용화장실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3. 8. 19

서울특별시장

1. 시설기준

o 규모 : 남자중, 여자용이 구획된 3명 이상의 구조식 화장실로 한다

o 위치 : 주유소 건물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다

o 구조 : 세멘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하고 바닥 및 벽면에는 타일을 부착한다

- 시설 :
 - 대변기 - 화변기 2개 이상 (남, 여 각각 1개 이상)
 - 소변기 - 1개 이상
 - 세면대 - 2개 이상 (남, 여 각각 1개 이상)
 - 난방시설 - 방열기 설치
 - 환기시설 - 환풍기 설치
 - 기타 - 저울 2개 이상 (남, 여 화장실에 구분 설치)
- 출입문 : 이용자가 외부로부터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관리기준

- 주유소내 설치된 공중이용화장실은 주유소에서 관리하되 유료 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다
- 주유소 대표자는 공중이용화장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파손 또는 노후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 주유소 대표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의 청결유지는 물론 수시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모품 (비누, 화장지 등) 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환풍기는 항상 가동되어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제반시설의 활용이 원활하도록 난방되어야 한다
- 공중이용 화장실은 주야 24시간 사용 가능토록 관리 (개방) 하여야 한다
- 안내 표시판은 통행인이 보기 쉬운곳에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의 모형은 별도 제정)

- 부 칙 -

- 1)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기존주유소는 1983.9.20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3) (경과규정)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개축이 가능한 기존화장실은 시설보완하여 (기존건물증, 개축)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유로 증, 개축이 금지된 기존주유소는 시설기준을 개별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432호

무교구역제 14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 439호 (81.12.21)로 사업시행 인가되고, 동고시 제 406호 (83.8.4)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무교구역 제 14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16조규정에 따라 고시한다.

1983. 8. 19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무교구역제 14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중구태평로1가 31-3외 5필지 다. 시행면적 : 7,435.9㎡ ○ 대지면적 : 6,728.0㎡ ○ 공공용지 : 707㎡ 라. 건축계획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			당 초 81.12.21- 84-10.15	변 경 81.12.31- 85.9.30
구분	당 초	변 경	사.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1983. 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생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공 고</div> <p>◎ 서울특별시공고제 450 호</p> <p>신당, 청량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년경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p> <p>1. 신당, 청량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당동, 청량리동일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요청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8호 (83.5.16)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 동법 제 47조, 동법 제 55조, 동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 환지계획변경 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정리과와 중구청,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p>	
건축면적	2,181.96㎡ (건폐율 32.5%)	건폐율 32.5%이하		
연면적	54,487.62㎡ (용적율 538.2%)	용적율 600%이하		
층 수	지상 18층, 지하 4층	지상 22층, 지하 4층 (무탑 2개층 포함)		
용 도	업무시설, 판매 시설	과 농		
마. 시행자				
	당 초	변 경		
	중구태평로 1가 31-3 서울신문사 사장 문 태 갑	중구태평로 1가 31-3 서울신문사 사장 문 태 갑 중구의주로 1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홍 두 표		
바. 시행기간				

으며 별도 통지는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1983.8.17.

서울특별시

가. 변경인가 및 지정내역

구 분	지 구	신 당 지 구		청 량 리 지 구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총	면 적	212,033	212,033	108,001	108,001
백	지	150,821	154,678	72,777	73,358
도	로	57,548	53,699	34,081	34,643
공	원	3,663	3,653	-	-
시	장	-	-	1,140	-

◎ 서울특별시공고 제 45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완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176 호 (83.3.25) 및 서울시고시 제 179 호 (83.3.29) 로 각각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한 마포구 성산동 354-8 호~성산동 94-6 호간 도로포장공사 및 아현동 415 번지~공덕동 91 번지간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이거 이를 공고한다.
2. 관제도서는 마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83.8.18

서울특별시

사업 개요

1. 사업시행지
 - 가. 마포구성산동 354-8 호~성산동 94-6 호간
 - 나. 마포구아현동 415 번지~공덕동 91 번지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3. 사업규모
 - 가. 마포구성산동 354-8 호~성산동 94-6 호간도로포장 : 총도로복 25

미터중 금회시공폭 6-12미터, 연장 750미터

나. 아현동 415 ~ 공덕동 91 번지간 : 6미터 연장 162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가. 마포구성산동 354-8 호 ~ 성산동 94-6 호간 도로포장

1) 착수년월일 : 83.3.25

2) 준공년월일 : 83.5.25

나. 아현동 - 공덕동간 도로정비

1) 착수년월일 : 83.3.29

2) 준공년월일 : 83.8.6

6. 준공내용

준공내용 : 도시계획사업 (도로) 완료
토공고증 (별첨) :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452 호

다동구역제 12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 46 호 (76.4.7) 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시고시 제 367 호 (83.7.20) 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다동구역 제 12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인 김병오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동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는 바,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동 시험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산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83.8.18

서울특별시

가. 공람개요

1) 재개발사업의 명칭

다동구역 제 12 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중구다동 94 일대 (12 필지)

3) 시행면적 : 1,996.4㎡

4) 시행자 : 중구충무로 3 가 25-2 김 병 오

5) 주된사무소취 소재지 : 중구다동 131 삼덕빌딩 511호

6)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년 6개월간

7)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396.8㎡
건폐율 : 40%이하

용 적 율 : 550 % 이하
 층 수 : 12층 이하
 주 용 도 : 업무시설
 (지하1층 판매시설)

8) 공람기간 : 83.8.18-83.9.17
 9)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제개발과 (교 2951)

사 령

◎ 1983년 8월 11일자

령제 31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민 현 기	환 경 과	환경녹지국	지방보건기사보

◎ 1983년 8월 12일자

제 31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고 석 창	세 정 과	재 무 국	지방행정주사
최 영 환	세 무 지도 과	"	"
고 광 돈	관 제 과	"	"

◎ 1983년 8월 16일자

령제 321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차 주 만	건설행정과 (가로정비요원) 과전근무를 명함 (83.8.16-83.10.15)	강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시보
방 진 석	" "	은 명 구	"

◎ 1983년 8월 18일자

령제 32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재 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과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장